

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89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25.

발의의원 : 김은영 의원

1. 제안이유

-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달성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보조금의 지원,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 제7조, 제22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헌신·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달성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한적십자사(이하 “적십자사”라 한다)”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달성군지구협의회를 말한다.
2. “적십자사 사업”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활동지원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
2.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
3. 보건의료·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
4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

제4조(보조금 지원 등) ① 군수는 적십자사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② 적십자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,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표창)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대한적십자사 조직법

제22조(사업 재원의 조성)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